

Овој Договор е составен во Пјонгјанг на ден 15.10.1997 година, во два истоветни примерока, секој на македонски, корејски и англиски јазик.

Во случај на несогласување, меродавен е англискиот текст на Договорот.

**ЗА ВЛАДАТА НА РЕПУБЛИКА  
МАКЕДОНИЈА**

Владимир Петковски, с.р.  
Амбасадор

**ЗА ВЛАДАТА НА ДЕМОКРАТСКА  
НАРОДНА РЕПУБЛИКА КОРЕА**

Ким Јонг, с.р.  
Заменик министер за економски  
односи со странство

**마케도니아공화국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사이의 투자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마케도니아공화국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 (이하 《체약쌍방》이라 한다)는 체약쌍방들사이의 호상리익에 맞게 경제 협조를 강화하고 체약일방의 투자자들이 체약상대방의 령역에 투자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들을 조성하고 유지할것을 희망하여, 체약쌍방의 경제적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투자를 장려하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정 의**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1. 《투자》란 체약일방의 투자자들이 체약상대방의 법과 규정에 따라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다.

- 1) 동산 및 부동산, 로력채용권, 저당권과 같은 담보권 및 소유권과 법에 따르는 기타 권리들
- 2) 주식, 주권, 사채권 기타 회사참가형식들
- 3) 화폐청구권 혹은 경제적가치를 가지는 임의의 리행청구권들
- 4) 저작권, 상표, 상표명, 특허권 혹은 기타 지적 및 광업소유권, 기술비밀과 영업권

5. 자연부원의 조사, 가공, 채취 및 개발을 포함한 활동들의 수행을 규정하는 해당규정에 따르는 권리들과 같은 법 혹은 협정에 의하여 양도되는 화폐적성격의 권리들
2. 《투자자》란 계약상대방의 영역에 투자하는 계약일방의 임의의 자연인 혹은 법인을 의미한다.
  - 1) 《자연인》이란 이 협정의 계약당사자들의 국적을 가지는 어느 계약일방의 임의의 자연인들을 의미한다.
  - 2) 《법인》이란 계약일방의 영역에 거주하면서 계약당사자의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조직된 기업소, 회사, 상사, 기업협회들을 포함한 임의의 법적실체를 의미한다.
3. 《수익금》이란 투자에 의하여 생성된 재부로서 특히 채투자된 자본 및 자산판매소득금을 포함하여 리윤, 리자, 배당금, 특허권사용료, 비용들을 의미한다.
4. 《영역》이란 다음과 같은것을 의미한다.
  - 1) 마케도니아공화국과 관련하여 마케도니아공화국이 국내법과 규정, 국제법에 따라 자주권과 관할권을 행사하는 령토, 강하천, 령공을 포함하는 령역을 의미한다.
  -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자주권과 관할권을 행사하는 령토, 령해, 령공, 해상 및 해저지역을 포함하는 령역을 의미한다.
5. 투자형태의 변화는 투자로서의 그 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제 2 조 투자 장려 및 허가

1. 계약쌍방은 계약상대방의 투자자들이 자기 령도에서 투자를 하도록 장려하며 자기 법과 규정에 따라 이러한 투자들을 인정한다.

2. 계약일방이 자기 령역에서 진행한 투자를 허락한 경우 그 계약일방은 자기 나라의 법과 규정에 따라 이러한 투자와 기술적, 상업적 혹은 행정적 협조합의서들 및 계약서들을 리행하는데 필요한 허가를 준다.

필요한 경우 계약쌍방은 외국국적을 가진 고문들과 기타 자격있는 인원들의 활동에 필요한 위임장을 발행하도록 노력한다.

### 제 3 조 투자 보호와 대우

1. 계약쌍방은 계약상대방의 투자자들이 자기 나라의 령역에서 진행한 투자에 대하여 자기 나라의 법과 규정에 따라 보호하며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로 관리, 유지, 리용, 향유, 확대, 판매 혹은 이러한 투자의 청산을 방해하지 않는다.

2. 계약쌍방은 자기 나라의 령역에서 진행하는 계약상대방의 투자에 대하여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를 제공한다.

이 대우는 계약쌍방이 자기 나라의 투자자들이나 제 3 국의 투자자들이 진행한 투자에 제공하는 대우보다 결코 불리하지 말아야 한다.

3. 이 조의 제 1 항과 2 항의 대우는 계약쌍방중 어느 일방이 당사자로 되는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 혹은 현존하거나 앞으로 맺게 될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협정이나 기타 재정분재와 관련된 협정과 관련하여 제 3 국의 투자자들에게 주는 특혜조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제 4 조 몰수 및 보상

1. 계약쌍방중 어느 일방도 계약상대방의 투자자들의 투자에 대하여서는 사회적목적을 제외하고 몰수 및 국유화 (이하 몰수라 한다) 하거나 그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치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 몰수는 차별없이 해당 법적절차에 따라 효과적이며 충분한 보상을 해준다는 조건에서 진행한다.

이러한 보상은 몰수나 립박한 몰수가 공개되기직전에 몰수된 투자자의 시장가치로 계산된다.

보상에는 몰수날자부터 지불날자까지 정상적인 상업환률로 계산된 리자가 포함된다.

2. 보상금액은 보상받는 사람의 거주지나 주소에 관계없이 자유전환성화폐로 자유로이 송금되어야 하며 부당하게 지체됨이 없이 지불된다.

보상은 일반적으로 송금완료 혹은 보상이나 송금수속에 필요한 기간내에 진행된다면 <부당하게 지체됨이 없이> 지불된것으로 간주된다.

보상기간은 해당한 보상요구가 제출된 날부터 3 개월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3. 계약상대방의 령역에서 투자를 한 계약쌍방중 어느 일방의 투자가들이 전쟁이나 기타 무장충돌, 국가비상사태, 폭동, 반란으로 손해를 입었을때 반환, 배상, 보상 혹은 기타 해결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방은 자기 나라의 투자가들이나 혹은 제 3 국의 투자가들에게 적용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적용한다.

이에 따르는 지불은 자유전환성화폐로 가능한 시기에 지체없이 송금된다.

## 제 5 조 송 금

1. 계약쌍방은 자기 령역에서 진행한 계약상대방의 투자에 관하여 계약상대방의 투자가들에게 그들의 투자와 관련한 지불에 대한 자유로운 송금을 담보한다.

송금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것들이 포함된다.

- 1) 투자의 유지 및 개발에 필요한 자본 및 추가금액
- 2) 수익금, 리득금, 리자, 배당금과 기타 류통수입금

- 3) 정상적인 계약서와 문건에 반영된 리자를 포함하여 특정한 투자와 직접 관련된 대부상환금
- 4) 특허권사용료와 비용들
- 5) 투자의 총체적 혹은 부분적 판매금이나 청산금
- 6) 제 4 조에 규정된 보상금
- 7) 계약상대방의 영역에서 투자와 관련하여 일하도록 허가받은 계약일방 국민들의 수입금

2. 송금들은 투자가 이루어진 계약일방의 절차에 따라 그 계약일방에 대한 모든 재정적 의무들이 리행된 조건에서 송금날자에 적용되는 환율에 준하여 자유전환성화해로 지체없이 진행된다.

3. 계약쌍방은 이 조의 제 1 항과 2 항에 언급된 송금들에 대하여 제 3 국의 투자자들이 진행한 투자로부터 생기는 송금에 적용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받아야 한다

#### 제 6 조 대위권

1. 계약당사자이거나 그 대리기관이 투자와 관련하여 계약한 담보 혹은 보험에 따라 그 투자자들에게 대금을 지불할 때 계약상대방은 계약일방이나 그 대리기관에 유리하게 투자가가 지닌 그 어떤 권한과 자격에 따르는 대위권의 유효성을 인정한다.

투자가의 권리에 따라 대위권을 행사하는 계약일방이나 혹은 그의 대리기관은 보험에 든 그러한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자와 같은 권리를 가지며 투자가의 의무들에 준하여 그들이 할수 있는 그러한 권리들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

2. 위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위권의 경우 계약일방이나 혹은 대리기관이 위임하지 않는한 투자자는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 7 조 계약일방과 계약상대방투자가사이의

#### 분쟁 해결

1. 투자가는 계약일방과 계약상대방투자자사이의 분쟁을 구체적인 자료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투자받은 계약일방에게 통지한다.

계약쌍방들사이의 분쟁은 우호적인 협상에 의하여 해결된다.

2. 만일 분쟁이 분쟁해결을 요구한 날부터 6개월이내에 우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면 투자가는 자기의 선택에 따라 분쟁을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 투자가 이루어진 영역안에 있는 계약일방의 해당한 재판소
- 혹은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UNCITRAL)의 중재규칙에 따르는 특별중재재판소
- 1965년 3월 18일 워싱턴 디씨에서 조인된 국가들과 다른 국가공민들사이의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에 따르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이 조항은 계약쌍방이 이 협약에 조인하였을때 적용된다.

3. 분쟁이 계약일방의 해당한 재판소나 혹은 국제중재에 제출된 경우 선택된 중재절차는 최종적이다.

4. 중재판결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른다.

- 이 협정의 조항들
- 투자가 이루어진 영역안에 있는 계약일방의 국내법
- 국제적으로 공인된 국제법의 원칙과 규정

5. 중재결정들은 분쟁쌍방들에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

계약쌍방은 국내법들에 따라 결정들을 이행할 의무를 지닌다.

## 제 8 조 계약쌍방사이의 분쟁해결

1. 이 협정 조항들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한 계약쌍방들사이의 분쟁은 외교적경로를 통하여 협의와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2. 계약쌍방들사이의 분쟁이 시작되어 6개월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계약쌍방중 어느 일방의 요구에 따라 분쟁을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 중재재판소에 제기한다.

제약쌍방은 각기 한명의 중재인을 임명하며 이 두명의 중재인들은 제약쌍방과 외교관계를 가진 제 3 국의 국민인 소장을 임명한다.

3. 제약쌍방중 일방이 자기의 중재인을 임명하지 못하고 2 개월내에 중재인을 임명할데 대한 제약상대방의 요구를 따르지 못했다면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소장이 그 중재인을 임명한다.

4. 만일 두명의 중재인들이 자기들의 임명후 2 개월이내에 소장선택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소장은 제약쌍방중 일방의 요구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소장이 임명한다.

5. 이 조의 제 3 항과 4 항에 지적된바와 같이 국제사법재판소소장이 언급된 기능을 수행할수 없는 경우 혹은 그가 제약쌍방중 일방이 국민인 경우 그 임명은 부소장이 하며 만약 그도 그 기능을 수행할수 없거나 제약쌍방중 어느 일방이 국민인 경우 그 임명은 제약쌍방중 그 어느 일방이 국민이 아닌 재판소의 그 다음 높은 판사가 한다.

6. 제약쌍방이 규정한 조항들에 준하여 재판소는 자기의 절차를 결정한다.

7. 재판소의 결정들은 제약쌍방에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

8. 제약쌍방은 중재과정에서 제기되는 중재재판소의 자기 성원이나 그 대표들의 비용을 부담하며 소장의 비용과 기타 비용은 제약쌍방이 똑같이 나누어 부담한다.

그러나 재판소는 제약쌍방중 어느 일방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데 대하여 결정할수 있으며 이 결정은 제약쌍방에 있어서 구속력을 가진다.

## 제 9 조 보다 유리한 조항들

만일 제약쌍방중 어느 일방의 국내법이나 이 협정외에 제약쌍방 사이에 현존하거나 앞으로 체결하게 되는 국제협정에 따르는 의무들에 이 협정에 규정된것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제약상대방의 투자자들이 진행한 투자들에 적용한다는 일반적 혹은 특별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규정은 더 유리한 범위에서 이 협정보다 우위에 놓인다.

## 제 10 조 협상 및 정보의 교환

제약쌍방중 어느 일방의 요구에 따라 제약상대방은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한 문제들을 협상한다.

제약쌍방중 어느 일방의 요구에 따라 제약상대방의 법, 규정, 결정, 행정적절차들 혹은 정책들이 이 협정에 따라 진행되는 투자에 출수 있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 제 11 조 이 협정의 적용범위

이 협정의 조항들은 제약상대방의 투자자들이 이 협정이 효력발생후에 제약일방의 령역에서 진행한 투자들에 적용된다.

그러나 이 협정의 조항들은 이 협정이 효력을 발생하기전에 제기된 분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제 12 조 협정의 수정

이 협정은 제약쌍방사이의 호상 서면합의에 의하여 수정된다.

어떤 수정도 제약일방이 제약상대방에 이러한 수정의 효력발생과 관련한 법적수속을 끝냈다는것을 통지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제 13 조 효력발생, 지속기간 및 종결

1. 이 협정은 제약쌍방이 이 협정효력발생에 필요한 국내법적 요구사항이 해결되었다는것을, 호상통지한 날부터 30 일후에 유효하다.

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적어도 협정만기 12개월전에 계약일방이 상대방에 협정종결에 대한 결정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자동적으로 10년간씩 연장된다

3. 이 협정의 종결통지가 있기전에 진행된 투자와 관련하여 이 협정의 1조부터 11조의 조항들은 이 협정폐기날자로부터 10년동안 계속 유효하다

이 협정은 주체 86 ( 1997 ) 년 10월 15일에 평양에서 마케도니아어, 조선어, 영어로 두부씩 작성되었으며 모든 원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해석에서 차이나는 경우 영문에 준한다

마케도니아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위임에 의하여

정부의 위임에 의하여

A G R E E M E N T  
B E T W E E 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MACEDONIA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 O R E A  
O N

THE PROMOTION AND RECIPROCAL  
PROTECTION OF INVESTMENT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MACEDONIA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Parties", desiring to intensify economic cooperation to the mutual benefit of both Contracting Parties, intending to create and maintain favorable conditions for investments by investors of one Contracting Party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recognizing the need to promote and protect foreign investments with the aim to foster the economic prosperity of both Contracting Parties,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Defini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1. The term "investment" means any kind of assets invested by an investor of one Contracting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shall include: